

예 산 총 칙

제 1 조 2020년도 사단법인 인천밀알 행복한일터의 3차 추경 예산(안) 총액은 세입 372,956,849원, 세출 380,436,849원으로 한다.

제 2 조 1. 세입·세출의 주요 재원은 다음과 같다.(관 또는 항 단위)

2. 세입의 주요 재원

관/항	사업수입	보조금수입	후원금수입	전입금	이월금	잡수입	총액
예산	99,000,000원	239,235,000원	15,675,000원	2,000,000원	18,512,400원	6,014,449원	380,436,849

3. 세출의 주요 재원

관/항	사무비	재산조성비	사업비	잡지출	예비비 및 기타	보조금반환	총액
예산	228,697,000원	14,590,000원	136,329,000원	200,000원	606,154원	14,695원	380,436,849

제 3 조 세입·세출 예산 명세서는 붙임 「2020년 행복한일터 세입·세출 3차 추경 예산(안)」 과 같다.

제 4 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총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
제 5 조 예산의 전용에 있어,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제10조, 제16조에 의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관·항·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. 다만, 예산의 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대표이사(또는 시설장)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.

제 6 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지정후원금 등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보조금 및 후원금 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 7 조 제5조와 제6조는 시설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, 법인이사회회의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8 조 기타 회계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 변경된 과목으로 승인된 것으로 보며 그 외 예산 총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에 따라 집행한다.

2020년 3차 추경 예산 내용

<세입>

(단위 : 원)

구 분	과 목			예산액	전용액	예산현액	사유
	관	항	목				
세 입	보조금수입	보조금수입	기타보조금수입	4,000,000	3,480,000	7,480,000	- 미추홀구 환경보전과 실내공기질 관리 시스템 지원원사업(공기청정기) 선정
	잡수입	잡수입	기타잡수입	2,000,000	4,000,000	6,000,000	- 코로나19 휴관으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 발생(6~8월)

<세출>

(단위 : 원)

구 분	과 목			예산액	전용액	예산현액	사유
	관	항	목				
세 출	사무비	인건비	사회보험부담금	18,089,310	-200,000	17,889,310	- 종합건강검진비 증액으로 인한 감액
			기타후생경비	1,400,000	200,000	1,600,000	- 종합건강검진비 증액
		운영비	제세공과금	4,370,000	-1,700,000	2,670,000	- 노후시설 및 장비로 인한 시설관리비 증액
			차량비	1,040,000	200,000	1,240,000	- 발전기 교체 및 수리로 인한 추경
	재산조성비	시설비	자산취득비	3,960,000	3,480,000	7,440,000	- 미추홀구 환경보전과 실내공기질 관리 시스템 지원원사업(공기청정기) 선정
			시설장비유지비	5,650,000	1,500,000	7,150,000	- 노후시설 및 장비로 인한 시설관리비 증액
	사업비	사업비	재활프로그램사업비	19,750,000	-3,100,000	16,650,000	-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비 감액
		생산활동지원비	원재료구입비	15,000,000	9,000,000	24,000,000	- 쇼핑백제작 증가로 인한 추경
		직업재활사업비	직업적응훈련비	14,225,000	-1,900,000	12,325,000	-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비 감액